

의안번호	2215353
의 퇴 인	진성준의원
회 답 일	2026. 2. 10.
추 계 번호	25D70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3명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5,700만원, 2030년 5억 7,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2억 200만원(연평균 4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 조정 (안 [별표 3])	357	417	423	430	575	2,202	440

주: 1.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 조정(안 [별표 3])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보전액, 기탁금 국고귀속률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표(2,978명))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424명에서 427명으로 3명 증원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표(2,978명))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수를 3명 증가시키는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의 변화는 매년 지출되는 의정활동¹⁾ 및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이 있음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이 있어 재정소요의 변화 발생
 - － (지출) 의정활동 관련 비용, 정책지원관 인건비,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
 - － (수입)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본 추계에서는 2명의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7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동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11)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0%	1.9%	2.0%	2.0%	2.0%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부문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이고, 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은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 및 수입항목별 인원, 1인당 지급액 등을 곱하여 재정소요의 변화를 산출
- (의정활동) 개정안에 따라 3명의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증가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인원)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3명
 - (1인당 지급액)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지급액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2026년에만 발생)를 말함
 - 추계기간 동안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 0.1%에 따라 증가
 - 기본경비는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 40.7%³⁾을 적용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⁴⁾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3)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자료 중 서울시 기초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

4)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816%, 2027년 9.129%, 2028년 9.444%, 2029년 0.785%, 2030년 10.129%

[표 2]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지급액 추정(각 항목별 연간지급액):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	1,800	1,800	1,800	1,800	1,800
월정수당	3,435	3,439	3,442	3,446	3,449
기관부담금	462	478	495	513	532
기본경비	2,131	2,132	2,133	2,135	2,136
소계	7,828	7,849	7,871	7,894	7,917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개정안에 따라 2명의 일반임기제 7급 지방공무원을 채용하여 보수, 기
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3명이므로 정책지
원관은 2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지급액은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말함
 -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
반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2026년 연간 보수는 6,609만원이고 이후에는 최근 3
년(2024~2026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0%를 적용

[표 3] 일반임기제 7급 지방공무원 보수: 2026년 기준

(단위: 천원)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7급 상당	60,326	1,680	4,080	66,086

주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⁵⁾

주2: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지방의회 사무기구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을 적용

주3: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
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
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
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
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 기관부담금 요율은 공무원 기준으로 2026년 13.067%, 2027년 13.129%, 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 기본경비 비율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의 분야별 지출 규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인력운영비의 20.5%⁶⁾

[표 4] 정책지원관 1인당 지급액(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a)	6,609	6,807	7,011	7,222	7,438
기관부담금(=a×기관부담금요율)	864	894	925	959	995
기본경비(=a×기본경비 비율)	1,355	1,395	1,437	1,481	1,525
소계	8,827	9,096	9,374	9,662	9,958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에만 발생하며 후보자 수는 5명으로 가정하고, 기탁금은 1인당 200만원이며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 후보자 수는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수 대비 후보자 수 비율(1.7배 = 후보자 4,445명 ÷ 정수 2,602명)을 활용하여 추정하면 5명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은 1인당 300만원이고, 국고 귀속률은 15.7% 적용⁷⁾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기준 2,346만원⁸⁾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에 따라 상승

6)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

7)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 기탁금 반환율은 84.3%이고 이를 역으로 계산한 국고 귀속률은 15.7%

8)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1,042억 8,945만원이고 후보자 수는 4,445명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약 2,346만원으로 추정

[표 5]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2,585	-	-	-	2,796
1인당 기탁금 수입(=200만원×15.7%)	31	-	-	-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를 3명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5,700만원, 2030년 5억 7,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2억 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의정 활동	인원(a, 명)	3	3	3	3	3	-
	1인당 지급액(b, 만원)	3,914	7,849	7,871	7,894	7,917	-
	연간 지급액(c=a×b, 백만원)	117	235	236	237	238	-
	자산취득비(d=a명×498만원, 백만원)	15	-	-	-	-	-
	소계(e=c+d, 백만원)	132	235	236	237	238	1,078
정책 지원관	인원(f, 명)	2	2	2	2	2	-
	1인당 지급액(g, 만원)	4,414	9,096	9,374	9,662	9,958	-
	연간 지급액(h=f×g, 백만원)	88	182	187	193	199	-
	자산취득비(i=f×432만원, 백만원)	10	-	-	-	-	-
	소계(j=h+i, 백만원)	98	182	187	193	199	859
선거	후보자 수(k, 명)	5	-	-	-	5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l, 만원)	31	-	-	-	31	-
	보전액(m=k×l, 백만원)	2	-	-	-	2	4
	1인당 기탁금(n, 만원)	2,585	-	-	-	2,796	-
	기탁금 수입(o=k×n, 백만원)	129	-	-	-	140	269
추가재정소요(=e+j+m-o, 백만원)		357	417	423	430	575	2,202

주: 2026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급액은 6개월치만 산정함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